

공 동 행 위 의 인 가 신 청 서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		처리기간 30일
참 가 사 업 자 대 표 (사업자단체)	① 명 칭	② 참가사업자수
	③ 주 소	(전화번호)
	④ 대표자성명	(한 자)
⑤ 실 시 기 간		
⑥ 실 시 내 용		
⑦ 실 시 방 법		
⑧ 실 시 사 유		
<p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(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)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(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공 동 행 위 의 인 가 신 청 서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 20 </p> <p>신청인 대표 ①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공정거래위원회 귀중</p>		

<기재방법>

1. 실시내용은 법 제 19조(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)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동행위의 유형에 준하여 기입할 것.
2. 실시방법은 실시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음.
3. 실시사유는 법 제 19조(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) 및 시행령 제24조의2(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) 내지 제28조(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)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행위의 인가사유중 해당되는 것을 기입할 것.
4.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입할 것.